

대한민국 -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1. 27.

총 1 면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(2)

◎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뿐 만 아니라 궐위로 인한 선거, 재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,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, 임기 중 궐위로 인한 선거, 대통령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당선 무효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재선거입니다.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는 임기에 맞추어 5 년에 한번 씩 선거를 실시하며,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 일 이내에 실시합니다. 제 18 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2 년 12 월 19 일입니다.

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 년에 한 번씩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며, 제 19 대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2012 년 4 월 11 일입니다.

선거의 종류	참여할 수 있는 선거
대통령 선거	•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• 궐위로 인한 선거 • 재선거
국회의원 선거	•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

※ 국회의원 재·보궐선거, 지방선거, 국민투표,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 >

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
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